

일 자리 안정자금



일 자리
안정자금



발표순서

- I 사업 개요
- II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요건
- III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
- IV 신청절차 및 방법
- V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
- VI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 예외 인정 기준


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



I 사업 개요

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



'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
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**소상공인·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**

'18년
최저임금
7,530원

'17년 대비
1,060원 인상

7.16

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」 발표

- ①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: 3조원 내외,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감안 대상선정
- ② 제반 비용부담 완화: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,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
-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: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, 가맹점·대리점 보호 강화 등

8.21

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(안)의결 (국무회의)

* 기재부·고용부(공동주관), 산업부, 복지부, 중기부,
국세청,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 TF 운영

11.9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(안) 발표 (경제관계장관회의)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



사업 근거 →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

사업 기간 → 2018.1.1~12.31

사업 대상 → 30인 미만 사업장 (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)

대상근로자 →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
(1개월 이상 고용유지, 고용보험 가입,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조건)

사업신청 → 온라인: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, 사회보험 3공단 EDI, 4대보험 연계센터
오프라인: 복지·건보·연금공단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자치단체 주민센터

지원 방식 및 지원 금액 →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
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 지급, 요건 충족시 소급 지급

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	월 13만원
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	근로시간 기준 3~12만원
일 용 근로자	월 근로일수 기준 10~13만원

(근로자 1인당)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체계 및 절차



고용노동부

-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
- 예산편성 및 배정(보조금 교부)
-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
- 부정수급액 징수, 제재부가금 부과



근로복지공단

- 사업 주체 (보조금 집행)
- 관리 및 홍보
-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(부정수급 적발, 환수명령)



보조금 신청



접수



심사



지급



사후관리

사업주

온라인
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(e-나라도움)
3공단 EDI 등

오프라인
복지·건보·연금공단,
고용센터, 주민센터

근로복지공단

근로복지공단

근로복지공단
고용노동부
(e-나라도움)



II

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 요건

지원 대상 기업



원칙적으로 모든 “30인 미만” 고용(사업)주에 지원

30인 미만
고용(사업)주

'18년도
최저임금 준수

지원금 지급기간
내 고용 유지

지원제외
대상

-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원 초과)
- 국가 등 공공기관
-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
-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-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

예외적
지원 대상

취약직종 「공동주택」 경비·청소원」 근로자는 30인 이상
고용 기업도 지원



[지원대상 기업] 30인 미만 사업(주)



- ☑️ 지급희망월* 기준,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“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”
 -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
 - 해당 사업(주)의 상용, 일용, 고용보험 적용제외자(외국인 등)를 포함하여 산정
 - 단, 특수 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)은 제외,
초단시간 근로자(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)는 0.5명으로 산정

*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여, 사업주가 신청 시 지급시작을 희망하는 달을 선택할 수 있음

- ☑️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

- ☑️ 지급 도중 근로자수 변동(인원 증가)이 발생한 경우
 -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
 - 지원중단 이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재신청 가능

- ☑️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제외





[지원제외 1] 고소득 사업주



☑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

* '18.1.1~8.31 신청사업주 → '16년 자료, '18.9.1 이후 신청사업주 → '17년 자료로 검증

개인사업

소득세법 제3조,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
해당 연도 '사업소득금액'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

* 사업소득금액: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

☞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**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금액**

법인

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
해당 연도의 '당기순이익'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

* 당기순이익: 일정 기간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



[지원제외 2]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



- ☑ 고용부 홈페이지, 워크넷 등에 **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(주)**

임금체불 명단공개 제도 개요

-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,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
(근로기준법 43조의2)
 - 공개 내용 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)
성명·상호·나이·주소(법인은 대표자 성명·나이·주소 및 법인의 명칭·주소),
3년간 체불총액
 - 관보게재, 인터넷 홈페이지, 지방관서게시판, 기타 열람 공공장소
 - 공개기간: 3년
- ☑ 법인은 해당 법인, 개인사업주는 대표사업주 및 공동대표도 포함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
 - ☑ **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 근로자에 임금체불 발생 시, 해당월부터 지급 중단**



[지원제외 3] 국가 등 공공기관



☑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 (총 1,106개)

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	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	48개
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	광역 17개소, 기초 228개	245개
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	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등	336개
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	직영기업, 지방공사, 공단	398개
지방자치에 관한 법률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	시·도 교육청, 국·공립 대학, 초·중·고등학교	76개



[지원제외 4] 인건비 재정지원사업 대상



- ☑ **원칙** 국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, 운영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금을 받거나,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(주)는 지원 배제

- ☑ **예외** '일자리 안정자금'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지원금(인건비)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
 - 지원대상 근로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원에서 제외 후 지급
 -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근로자수만큼 차감 후 지급
(지원근로자수 × 13만원)



[지원대상 기업] 지원기간 동안 “고용유지”

- ☑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‘고용조정’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함

고용조정으로
근로자를
퇴직시키는 경우

-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(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)
- 권고사직(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6번)

- ☑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 발생시, 해당 월 지원금부터 지원 중단

- ☑ 불가피한 고용조정시, 이를 소명해야만 계속 지원 가능

⇒ 재고량 증가, 생산량 감소,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

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의 범위

- 고용조정 이전 달 기준 직전 3개월간 재고량 50% 이상 증가, 생산량 30% 이상 감소, 매출액 30% 이상 감소한 경우
-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,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 축소
-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
- 기타 업종·지역경제 상황을 고려,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

[지원요건] 지원대상 근로자



지원 대상 사업(주)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

요건1

월평균보수액
190만원 미만

요건2

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
*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
15일 이상 실근로

요건3

고용보험 가입
* 적용제외자(외국인, 초단시간)와
적용제외 사업장(5인 미만 농림임업)은
가입없이 지원

요건4

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
*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대표와
협의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조정한 경우
인정

지원
제외

• 사업주,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



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



☑ '18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**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**인 근로자 대상

* 보수(보험료징수법 제2조):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(기본급+통상적 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
* 보수총액(고용·산재보험료 산정 기준):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(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)

☑ **일용근로자는 1일 기준 87,000원 미만**

⇒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
☑ **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100~120% 범위 내**

- 기 신고된 전년도(또는 전전년도)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을 넘은 경우 ⇒ **부지급**
- 지원기간 중 급여인상으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이상이 된 경우
⇒ **다음달부터 지원 중단**
- 기본급 등 월평균보수(190만원 이상)나 소정 근로시간 등 변경된 경우 ⇒ **변경신고**
※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수 될 수 있음



II

지급금액 및 지급방식

1 ▶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

⇒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

✓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·퇴사·휴직한 경우, 근무일수에



$$\text{지원액} = 13\text{만원} \times \frac{\text{근로일수}}{\text{해당 월 일수}}$$

* (입사)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,
(퇴사·휴직)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(휴직)일까지 일수

2 단시간 근로자 (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)

⇒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

(변경신고 등 사업주의 신청편의, 업무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 구간 설정)

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

* 단시간 근로자 또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% 이상 120% 이하인 경우에 지급 가능

소정근로시간(주 단위)	지급기준 시간	지급액
30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	35시간	120,000원
20시간 이상 ~ 30시간 미만	25시간	90,000원
10시간 이상 ~ 20시간 미만	15시간	60,000원
10시간 미만	5시간	30,000원

✓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·퇴사·휴직한 경우,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
$$\text{지원액} = \text{구간별 지원액} \times \frac{\text{근무일수}}{\text{해당 월 일수}}$$

* 상용·단시간 근로자 중 '육아휴직'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,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3 일용근로자

⇒ 월 근로일수, 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비례 지급

근로일수 별 지급 기준(1일 8시간)

월 근로일수	월 평균 근로일수	지급액
22일 이상	22일	130,000원
19일 이상 ~ 21일 이하	20일	120,000원
15일 이상 ~ 18일 이하	16.5일	100,000원

* 지급율 = 평균 근로일수 ÷ 22.3일, 산정액: 130,000원 × 지급율

<산정 예시>

- 1일 8시간, 22일 이상 근로한 경우 : 130,000원*(8/8) = 130,000원
- 1일 6시간, 22일 이상 근로한 경우 : 130,000원*(6/8) = 97,500원

지급방식



지급 시기

- ☑ 최초분(지급희망월~신청월 전월분) 지급
-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,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

*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,
회계연도 마감을 감안,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

- ☑ 2회분(신청월분 이후) 이후 지급:
매월 10, 20,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

지급 방법

- ☑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
-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

직접 지급

개인은 개인 사업주 통장
법인은 법인 통장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

사회보험료 대납

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부과금 전체에서 각 보험료로 안분하여 대납 처리



II

신청절차 및 방법

신청자 및 신청시기



신청자

- ☑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
 - 보험사무대행 기관 활용 가능 (무료 대행)
 - 신청당시 해당 사업(주)이 1개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 - '18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, '18.11.30.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

신청시기

- ☑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 신청 ('18.1.1~12.31)

지급기간

- ☑ 최초 지원대상월부터 '18년말 임금지급월까지 (신청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)
 -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월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

신청방식



온라인

- '일자리 안정자금'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 - **5인 이상 사업장은 온라인(EDI) 신청이 원칙**
 - 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 기존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능

명칭	사이트 주소	운영기관	홈페이지 문의
근로복지공단EDI (고용·산재보험 토달서비스)	http://total.kcomwel.or.kr	근로복지공단	1833-6000
국민건강보험EDI	http://edi.nhis.or.kr	국민건강보험공단	1577-1000
국민연금EDI	http://edi.nps.or.kr	국민연금공단	063-713-6565
고용보험EDI	https://www.ei.go.kr	한국고용정보원	1577-7114
4대보험정보연계센터	http://www.4insure.or.kr	국민연금공단	063-711-7800

오프라인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,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
- 사업장 관할 건보·연금·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(기업지원과), 주민센터(팩스, 우편, 방문)

신청서식 및 첨부서류



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

신청
서식

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

- '18년 신규 사업장/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
⇒ 고용보험 성립신고서,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
- 기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
⇒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
- 일용근로자
⇒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

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
지급신청서 (별도서식)

첨부
서류

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

- 임금대장, 무통장입금증, 급여통장사본 등
- ex) '18. 5월에 근로자 2인 지원신청시
근로자 A(1월 입사), 근로자 B(3월 입사)
(제출) 근로자A: 1월 임금대장,
근로자B: 3월 임금대장

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

-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
-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

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

- 사업자등록증, 농업경영체증명서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 등

신청 시 유의사항



- ☑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
⇒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 제출

- ☑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, 일용직의 '근로내용확인신고서', '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'의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(고용·산재보험토털서비스)에서만 가능

- ☑ 신청서와 더불어 체크리스트와 부속서류를 추가 입력(또는 제출)

- ☑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//고용·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다운

- ☑ 3공단 공동접수 등을 위해 '고용보험 관리번호' 단위로 신청
 - 개인 사업(주) 중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사업(주) 명의로 신청,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신청서식에 추가 기재
 - 단, 사업규모 및 지원요건 판단은 사업(주) 단위(주된 사업장 관리번호)로 산정

- ☑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적극 활용

추가 및 변경 신고



추가신고

- ☑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되는 경우
⇒ '고용보험 신고서'로 신고
(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,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)

변경신고

- ☑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
⇒ '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' + 고용보험 관련 신고 병행
- ☑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시
⇒ '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' +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



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

부정수급에 대한 조치



부정수급 정의 및 유형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(보조금법 제33조제1항)

- ☑ 거짓 신고,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·제출 등
- 근로자의 입·퇴사일,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등록(위장 취업), 임금지급내역 서류의 위변조 등
- ☑ 노·사가 담합하여 인위적 지원요건 충족
- 사업장 분할 설립, 급여내역 및 실 근로일수 등을 조작 등
- ☑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

적발시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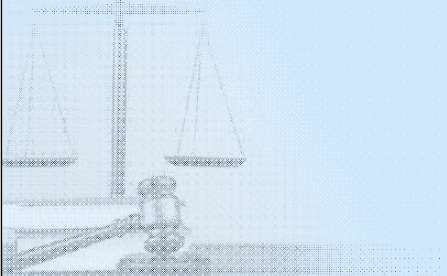
지원금 전액 환수

‘제재부가금’ 부과

(지원금액의 5배)

형사고발 조치

- 부정수급 1천만원 이상
-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



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 예외 인정 기준
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 지원 기준


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

* 공동주택 :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)

지원 대상

-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**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, 그 외의 사업은 해당 사업별로**
 -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⇒ **소속 근로자 전부 지원**
 - " 30인 이상 ⇒ **경비·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**

지원금 수령

- **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(시설주) 등에 지원금 지급**
 - ⇒ 용역업체가 “지원금 + 최저임금 인상분 시설주에 재청구”하는 부정수급 방지
 - ⇒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 지원금 직접 지급하여 경비·청소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
- *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,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어 유형별로 구분 지원
- **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·청소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**

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

제출서류

- ☑ 입주자대표회의(또는 자치기구)와 위탁업체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“표준협약서”
 -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,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
 -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·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한 경우는 협약서 불필요

신청방법

- ☑ 근로복지공단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)에 온라인/오프라인 신청 (타공단, 주민센터 등 접수 시 공단으로 즉시 이첩)
 - ①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
 - ② 체크리스트 작성
 - ③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(공동주택용) 서식 작성·제출

신청시 유의사항

- ☑ ‘일자리안정자금 신청내역’에 공동주택별로 구분 기재
 - *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
공동주택별로 지원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
- ☑ ‘경비·청소원’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
- 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시스템) 필수등록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등록
 - * 필수등록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도·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 차감 내역 등 확인
 - * 미등록 확인 시 해당 월부터 지급보류 → 등록 이후 소급 지급 ⇒ 모니터링 실시



감사합니다